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하수급인의 철골제작작업과 설치작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밀접하게 연관된 단일공사로서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판시한 사례

A OO산업은 지하철역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이 공사의 하청을 받은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사용하는 철골 제작 작업을 제철공장에서 시행하였고, 이 공장에 대하여는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았다.

위 제철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마그네틱 드릴을 사용하여 철골 제작작업을 하다가 장갑 낀 손이 드릴 날에 감기는 바람에 좌요 척골골절 및 좌3수지 골공골절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처분기관에서는 제철 공장은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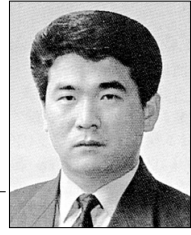
이에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발주자가 단일한 건설공사를 원수급인에게 도급단위별로 나누어 각 도급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도급계약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등 동일한 위험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보험요율이 상이한 관계로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으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그 중 일부공사를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확장 해석하여 위 다른 공장에서 일부분사업만을 따로 떼어내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 12년 전甲에게 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 변제기일은 1년으로 하여 차용증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그후 甲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고, 최근 甲의 소재를 알게 되어 甲으로부터 위 금액을 2년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로이 받았습니니다. 주변에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지불각

서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요?

A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의 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甲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甲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민법 제168조 제4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민법 제184조 제항의 반대해석), 甲의 지불각서의 작성?교부행위를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라 본다면 위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입니다. 관례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때에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12. 28. 65다2133).

그리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지불각서기재의 지급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문: 박문우 변호사(031-874-1652)

한·방·상·식

한방 1과 과장 박주한



중풍의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것은 결코 아무 이유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어느정도 혈액공급이 부족해도 뇌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거나 가벼워서 일시적으로 어지럽거나 감각이 약간 둔해지는 정도로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풍은 50~60대의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이 중풍의 주요원인인 동맥 혈관의 동맥경화증은 30~40년대부터 발견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는 일단 중풍을 의심해야 한다. ▶몸의 한쪽 팔다리, 얼굴 근육 등이 저리거나 약하게 느껴질 때 ▶말을 하거나 알아듣는 것이 곤란하고 음식이 잘 삼켜지지 않을 때 ▶한쪽이나 양

쪽 눈이 가깝게 안보이거나 희미할 때 ▶소리가 잘 안들리거나 이명(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날 때 ▶몸의 균형이 잘 안잡혀지고 어지러우며 물건이 돌로 겹쳐 보일 때 ▶구역질이 날 때 ▶이유없이 두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신경질이 날 때 ▶혈압이 높거나 가족중에 중풍, 고혈압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며 구토가 있는 증상을 호소할 경우 체한 것으로 알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중풍의 증상에는 시시로 흥분상태에서 수족을 마구 흔들거나 불필요한 말을 중얼거리는 섬망증상, 부르짖는 눈을 떴다가 잠시 후에 눈을 다시 감고 자는 기면증상, 그리고 혼수 등으로

나타내는 의식장애, 한쪽의 손발이 마비되는 편마비증상, 언어의 구사를 말의 뜻과 똑같이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를 말한다. 병행별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대개 "뇌출혈"이다. ▶심한 두통과 동시에 구토를 하는 경우는 대개 "지주막하출혈"이다. ▶심장병이 있는 환자에게는 특히 부정맥이나 관막의 질환이 있는 환자는 "뇌전색"이다. ▶아침잠을 깨어보니 반신마비가 와있는 경우는 "뇌혈전증"이다. ▶한쪽 수족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가벼운 마비증상이 2시간 내로 회복되는 경우는 "일과성뇌허혈발작증"이다. 발생의 빈도는 뇌경색이 약 60%이고 그중 약 1/3이 뇌전색이며 뇌출혈은 약 40% 또는 신체부검으로 뇌경색이 42% 뇌출혈이 46% 일과성뇌허혈발작이 12%였다 한다.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심장병, 당뇨병, 신장병, 동맥경화증 등을 들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의정부한방병원 (031-820-7200) www.ujphanbang.co.kr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성폭력가해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거나 특별한 사람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가해자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할 수 있으며 때로는 기회를 보다가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해자에게도 심리적, 법적,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충동조절훈련을 남성이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폭력가해자들의 대체적인 특징으로는 첫째로 낮은 자존감을 들 수 있는데 자기중심적이고, 빈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며, 왜곡된 사고와 성적 집착이 강함

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낮은 자존감과 저조한 기본에 사로잡힐 때가 많으며 많은 경우에 평소 감정을 과잉억제하거나 회피하다가 과잉 폭발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때 술과 동반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들은 사회적 대인 기술을, 자기주장 기술, 분노관리 기술이 미비하여 자신의 감정표현이나 만족도의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로 성폭력 행위를 부인하거나 최소화 하는 데 1단계로 사건을 부인하며 2 단계로는 책임을 부인하며 3단계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부인하게 됩니다.

셋째로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 인지왜곡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문제, 느낌, 행동의 진정한 범위를 최소화, 합리화, 정당화, 변명, 부인을 함으로써 피해자, 피해자 부모, 제 3자, 또는 술, 어린 시절 개인적 경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들은 타인의 행동을 성애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성의 명백한 부정적 행동, 태도 등을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여성의 제스처나 행동을 성애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성폭력 행위 중에도 피해자가 즐겼거나 기뻐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넷째로 타인의 경계선에 대한 학습부재가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는 자신의 몸, 개인적 감정,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유물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계선은 각 개인이 보호받고 싶고 원하지 않은 지점을 말합니다. 특히 성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이해하거나 존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자신의 요구와 희망사항에만 열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문: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포천의료원 제 3내과 과장 양동훈



소화성궤양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 인구의 8%-15%에서 일생동안 한 번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남자에서 여자에 비교하여 약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성궤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두 가지 원인을 꼽자면 첫째, 헬리코박터

소화성궤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균의 감염, 둘째로 약물(아스피린을 포함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에 의한 궤양

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 외 화상이나 뇌 손상과 같은 스트레스도 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궤양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위산 분비 억제제와 같은 약물치료가 주가 되며, 궤양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치료와 궤양을 유발하는 약물의 중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지면을 통해서 궤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보다는 일반인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진료실에서 궤양환자들이 흔히 하게 되는 질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포천의료원 (031-539-9114)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 공제를 하게 되는데 기본공제 판정시 연간소득금액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요?

A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을 파악할때 흔히 생각하는 근로소득이

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만이 아니라 타 소득도 의미하므로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아닌 자에 한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흔히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등을 차감한 금액이되며,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

서 비과세 소득을 제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한후의 금액이 되며, 양도자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과 부동산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며 이자와 배당소득은 총수입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600만 원이라고 할때 소득금액은 총급여 6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5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인 50만원이 소득금액이 되며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도록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이 아니고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등을 제한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종합소득만이 아니라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도 포함된다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송 관 수(02-404-9944)

모발의 혁신 퍼 슨 코리아(주)

의정부점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드립니다”

PERSON KOREA

취침, 운동, 사우나 OK!!

퍼 슨 심는가발맞춤점

대표: 1544-5868 / 본사: (02)3143-6474~6

- 고객만을 위한 1:1 상담, 시술
- 양질 100% 인모 심는 가발
- 다양한 신제품
- 오랜경력의 스타일링
- 전국지점망 A/S
- 타사제품 관리, 수리

전국 대표 : 1544-5868 / 문의 : 031) 848-6476 / 지점장 : 김 나 영 www.personhair.co.kr